



APR CORP.

# 공정거래정책

## 목차(INDEX)

제 1 장 총칙 .....	2
제 1 조 (목적 및 적용대상).....	2
제 2 조 (원칙).....	2
제 2 장 선언 .....	2
제 3 조 (자유경쟁 추구).....	2
제 4 조 (법규의 준수).....	2
제 3 장 체계 .....	2
제 5 조 (공정거래 관리 체계).....	2
제 6 조 (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위험 실사 프로세스).....	3
제 7 조 (규정의 개폐).....	3
부칙 .....	4
<Ver. 1.0, 2026. 3. 13.> .....	4
<Ver. 2.0, 2026. 4. 20.> .....	4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 및 적용대상)

- ① 주식회사 에이피알 및 국내외 자회사(이하 '회사')는 경영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 정착에 앞장서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정책(이하 '본 정책')을 제정한다.
- ② 본 정책은 에이피알 및 그 자회사, 그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.

### 제2조 (원칙)

-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- ② 회사는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통해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손상, 기업 신용 하락 등 비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한다.

## 제2장 선언

### 제3조 (자유경쟁 추구)

- ① 회사는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에 적극 참여한다.
- ② 회사 및 임직원은 부당한 공동행위(담합행위, 경쟁사 정보 수집 또는 교환 행위 등)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(계열회사를 위하여 부당하게 비계열회사와의 거래 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,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)를 근절한다.

### 제4조 (법규의 준수)

- ① 임직원은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,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 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- ② 임직원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허위·과장광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.
- ③ 임직원은 비즈니스 파트너 의사에 반하는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,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요구를 금지한다.

## 제3장 체계

### 제5조 (공정거래 관리 체계)

- ① 공정거래에 관한 활동은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.
- ② 회사는 공정거래를 실천 및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본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.

- ④ 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본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할 수 있다.

### 제6조 (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위험 실사 프로세스)

- ①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및 부정경쟁 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위험에 대한 실사(이하 "위험 실사"라 한다)를 실시한다.
- ② 위험 실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.
  - 1. 회사의 영업활동 및 거래 구조
  - 2. 협력업체, 대리점, 유통채널 등 거래상대방
  - 3. 신규 사업, 신제품 출시 및 주요 계약 체결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
  - 4. 그 밖에 불공정거래 또는 부정경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
- ③ 위험 실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  - 1. 정기 실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  - 가. 신규 거래 개시 또는 거래 구조 변경 시
    - 나. 관련 법령 또는 규제 환경의 변경이 있는 경우
    - 다. 내부 제보, 감사 결과 또는 리스크 징후가 발견된 경우
- ④ 위험 실사의 주관 조직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준법·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위험 실사의 기준 수립 및 총괄을 담당한다.
  - 2. 관련 부서는 실사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개선조치 이행의 책임을 진다.
  - 3. 회사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⑤ 위험 실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.
  - 1. 계약서, 거래조건, 내부 규정 및 업무 프로세스 검토
  - 2. 거래 데이터 분석
  - 3. 담당자 인터뷰 또는 설문
  - 4.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대비 적정성 점검
  - 5. 필요 시 현장 점검 또는 표본 조사
- ⑥ 회사는 위험 실사 결과를 분석하여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.
- ⑦ 관련 부서는 전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립·이행하여야 하며, 준법·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.
- ⑧ 회사는 중대한 위반 또는 고위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를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⑨ 회사는 위험 실사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.

## 부칙

**<Ver. 1.0, 2026. 3. 13.>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13일부로 제정 시행한다.

**<Ver. 2.0, 2026. 4. 20.>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4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